

소매물가조사지침

1979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소매물가조사지침

1979

차 례

1. 물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표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7
다. 단위	8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기준	9
라. 보조대상처	10
마. 대상처 변경	10
5. 조사시점	11
6. 조사방법	12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2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3
가. 조매물가 조사표	13
나. 영화관람료 조사표	14
다. 병세 조사표	15

라. 납입금 확인서	16
10. 조사표류 발송	16
가. 조사표 발송	16
나. 질의 조회 응답	16
11. 명부 작성	17
가. 가격 조사부	17
나. 대장처 명부	17
부 롤	19
I. 품목 및 품질규격	19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43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적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

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 단계별로 몇 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거나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 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 수준의 변동은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란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가계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계소비지출 계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류 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체에 있어서

는 소매 가격은 형성되나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편 서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물가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계소비지출을 중심으로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편재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표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 가격 및 서비스 요금인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혹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 편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체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계열 전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조사기 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의상 소매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기준의 지수 개편으로 가격의 비교 기준과 가중치의 기준을 1970년에서 1975년으로 변경하였고, 조사품목도 338개 품목에서 349개 품목으로 늘어

나개 되었으며, 조사지역도 서울을 비롯한 32개 도시에서 성남, 부천, 안양이 서로 승격됨에 따라 35개 도시로 확대되어 약 4,100여개의 대상처에서 가격을 수집하게 되었다.

2. 조사 품 목

도시가계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49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시별 조사 품 목수

도 시	총품 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비	피복비	잡 비
전 도 시	349	131	60	7	57	94
서 울	348	131	60	7	57	93
부 산	349	131	60	7	57	94
대 구	348	131	60	7	57	93
인 천	347	130	60	7	57	93
대 전	345	130	60	6	57	92
광 주	345	130	59	6	57	93
천 주	344	130	59	6	57	92
춘 천	341	130	57	6	57	91
청 주	341	130	57	6	57	91
기 타 시	339	129	56	6	57	91

3. 품질규격 및 단위

가. 품질규격

1) 가격계열의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
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자, 장표 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하므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가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양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치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격으로 조사한다.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3)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4) 소비자 주요가 극소한 경우

5) 거래단위의 판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 (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이
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 단위가 상이
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
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2) 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 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 지역

서울을 비롯한 35 개시에서 조사한다.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 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가) 도매점포

-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 하는 점포
- 다) 통신 판매점
- 라) 중고품 판매점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 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구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인데 신규대상처의 선정

은 대상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 시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 , 납입금 , 방세를 제외한 337

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 (2 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 . 방세 (10 품목)

조사일이 공휴일 , 휴식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 (추석 , 성탄절 등) 인 경우에는 2 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식일 , 공휴일이면 다시 1 일전에 조사한다.

" 예 "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6. 조사 방법

타계식 면접 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조사 요령

소매물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매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절 품목 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절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 품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준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7.0cm) 다른 규격의 갈치(9.0cm)만 출 회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 가격이 180원이라면 등락 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text{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 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소매 물가조사표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

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충정도 크기로 아래 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	2	0
					—2	—5

- 4)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이 형성되는 전기료, 담배 등 27개 종당 조사품목(비고란 ☆표)은 물가통계과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조사표에 가격을 기재해 서는 안된다.

- 5)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 6)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료 조사표

-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 2) 풍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는 제외한다.
- 3) 방화와 외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 4) 상영일자에 충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6) 1 배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 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며 빙이 둘이거나 점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시킨다.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란의 전기가격의 차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도록 한다. 예컨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차오가 없도록 한다. 예컨대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 한다.

7) 대상기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1)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 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한다.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
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틸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
(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세절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
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차여되어서는 안되어 조사원 유고시에
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질의조회 응신

1)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1. 명부 작성

가. 가격조사부(가격원부)

*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여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하므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총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 록

I.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위	비 고
10101	일 반 미	정미, 중품	8kg	
10102	단 일 미	정부방출미	8kg	☆
10103	혼 합 미	정부방출미	8kg	☆
10104	찹 쌀	정미	8kg	
10105	보 리 쌀	셀보리	7.65kg	
10106	밀	찹밀	7.5 kg	
10107	콩	백태	7.5 kg	
10108	팥	적두	8.33kg	
10109	녹 두	흑갈색	8.33kg	
10110	좁 쌀	차조	7.89kg	
10111	수 수 쌀	차수수	7.83kg	
10112	밀 가루	중력분 2등품, 제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포	
10201	쇠 고 기	정육	600g	
10202	돼 지 고 기	정육	600g	
10203	닭 고 기	육계 잡아서 텔뽑은것 내장제거 1마리정도	1kg	
10301	조 기	생선길이 30cm(우)	1마리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302	갈 치	생선몸길이 70cm 정도	1 마리	
10303	생 명 태	생선길이 45cm 정도(우)	1 마리	
103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cm 정도	1 마리	
10305	꽁 치	생선길이 30cm 정도	10 마리	
10306	가 자 비	생선길이 30cm 정도, 폭 15cm 정도	1 마리	
10307	대 구	생선길이 65cm, 3.5kg정도	1 마리	
10308	병 어	생선길이 25cm 정도	1 마리	
10309	물 오징 어	생선 몸길이 25cm 정도	10 마리	
10310	굴	상상한것	375g	
10311	조 개	껍질간것, 상상한것	375g	
10401	풀 비	길이 30cm 정도, 10마리	1 두루	
10402	마 른 멸 치	황백색 길이 5cm 정도	375g	
10403	마 른 오징 어	몸길이 25cm 정도(주문진산)	20 마리	
10404	복 어	황태길이 40cm 정도	1 마리	
10405	새 우 것	추것	375g	
10406	멸 치 것	완전히 삭은것	375g	
10501	달 칠	황색, 대량 개량 50g 정도	10개	
10502	분 유	서울분유 450g 들이	1통	
10503	연 유	서울연유 397g 들이	1통	
10504	목 장 우 유	각자방 우유협동조합제품 180cc 들이(고정배달)	1 병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505	버 터	서울버터 450g	1개	
10601	무 우	재래종, 잎없는 것 3개정도	3.75 kg	
10602	배 추	호배추	3.75 kg	
10603	양 배 추	겹겹질 벗진 것	3.75 kg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3cm 정도	3.75 kg	
10605	양 파	3개정도	375 g	
10606	시 금 치	신선한 것	375 g	
10607	콩 나 물	길이 5cm 정도	375 g	
10608	상 치	잎 상치	375 g	
10609	당 균	2개정도	375 g	
10610	오 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cm정도 (개당 120g정도)	10개	
10611	호 박	애호박 600g정도	1개	
10612	가 지	길이 25cm 정도	10개	
10613	도 마 도	2개 정도	375 g	
10614	감 자	흰색 2.5개 정도	3.75 kg	
10615	고 구 마	15개 정도	3.75 kg	
10616	도 라 지	겹질 벗겨 조개것, 싱싱한것	375 g	
10701	김	개량김, 검정색	10장	
10702	미 역	단각(총풀 15cm × 75cm 정도) (상표지정)	1장	

품목번호	품 목 별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703	다 시 마	말린 것	375 g	
10801	고 추	재래종, 원천히 마른 것	600 g	
10802	고 층 가루	증가루(고봉)	100 g	
10803	마 늘	마른 것, 직경 5cm 정도	1 접	
10804	천 일 염	국산 1등염(고봉)	2 ℥	
10805	제 제 염	국산, 고운소금(고봉)	2 ℥	
10806	참 깨	흰색	1 ℥	
10807	참 기 름	공장제품	0.18 ℥	
10808	채 종 류	유채유	0.18 ℥	
10809	콩 기 름	해표(동방유량), 프라스틱 병 90.0mℓ 들이(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 름	공장제품	0.18 ℥	
10811	설 탕	백설탕(제일제당) 비닐포장 500g 들이(KS 표시품)	1 포	
10812	구 루 타 민 산 소 다	핵산복합조미료미원(신선로표) 비닐포장 500g 들이	1 포	
10813	간 장	샘표(진간장) 900mmℓ 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샘표 간포장 450g	1 통	
10815	된 장	비닐포장 500g(상표지정)	1 포	
10816	생 장	10개정도	375 g	
10817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mℓ 들이	1 병	
10818	후 층 가 루	캔포장 100g 들이(상표지정)	1 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901	두부	150g 정도 (공장제품)	1포	
10902	라면	삼양 쇠고기라면, 120g 들이	1봉	
10903	국수	공장제품	375g	
10904	당면	순녹말	375g	
10905	단무지	왜무우	375g	
10906	마야가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 마야가린) 225g 들이	1개	
10907	소시지	진주소고기혼합어육 소시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10g 들이	1개	
10908	생선통조림	꽁치통조림, 425g 들이 (상표지정)	1통	
10909	과실통조림	복숭아통조림, 425g 들이 (상표지정)	1통	
11001	홍육	개당 180g 정도	10개	
11002	국광	개당 200g 정도	10개	
11003	배	개당 450g 정도	10개	
11004	복숭아	백도, 개당 250g 정도	10개	
11005	포도	흑갈색	375g	
11006	감	홍시, 개당 150g 정도	10개	
11007	곶감	곶이당 10개	1곶이	
11008	밤	굵은 것 (고봉)	1ℓ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1009	밀감	제주산, 개당 100g 정도	1개	
11010	바나나	수입품	375 g	
11011	참의	온천참의(나이론 참의) 개당 600g 정도	10개	
11012	수박	개당 5kg 정도	1개	
11013	딸기	개량종	375 g	
11101	크림빵	삼립특제 단팥빵 65g	1개	
11102	식빵	삼립식빵 800g (비닐포장)	1개	
11103	카스텔라	콘티 46g (비닐포장)	1개	
11104	건빵	100g 둘이 (상표지정)	1봉	
11105	드롭스	롯데 다이아캔디 80g	1봉	
11106	비스켓	오리온 만만 비스켓 130g 둘이	1봉	
11107	센베이	보통품	375 g	
11108	캬라멜	롯데 하이소프트 밀크캬라멜 16개입	1봉	
11109	초코릿	해태 나하나 초코렛 28g	1개	
11110	검	롯데 쥬시후레쉬 (6개)	1감	
11111	크랙카	오리온 크랙카 (동양제과) 60g	1봉	
11112	떡	인절미	600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1113	망 콩	볶은것, 속껍질 있는것(고봉)	1ℓ	
11114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 110cc	1개	
11115	아이스캔드	빙고 아이스바 60cc (상표지정)	1개	
11201	콜 라	코카콜라 19.0mℓ들이	1병	
11202	사 이 타	칠성사이다 34.0mℓ들이	1병	
11203	쥬 스	환타 35.5mℓ들이	1병	
11204	코 오 피	다방 판매품	1잔	
11205	홍 차	다방 판매품	1잔	
11206	밀 크	다방 판매품	1잔	
11207	유 산균음료	아쿠르트 65mℓ들이 고정배달	1병	
11301	매 주	오비 5.00ℓ들이	1병	
11302	소 주	진로 25도 36.0mℓ들이	1병	
11303	청 주	백화수복 특급 1.800mℓ들이	1병	
11304	약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2ℓ	
11305	탁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2ℓ	
11306	포 도 주	진로포도주 3.35mℓ들이	1병	
11401	설 렁 당	1급 대중식당	1그릇	
11402	냉 면	1급 대중식당	1그릇	
11403	비빔밥	1급 대중식당	1그릇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위	비 고
11404	짜 장 면	1급 중화요리점	1 그릇	
11405	우 동	1급 중화요리점	1 그릇	
11406	짬 뽕	1급 중화요리점	1 그릇	
11407	오므 라이 스	1급 대중식당	1 그릇	
20101	방 세 (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 기와집 부엌 있는 온돌방 1개	※	
20102	방 세 (월세)	"	1 개월	
20201	도 배 치	벽지 중질지 3색도 두루마리, $5.3\text{ cm} \times 500\text{ cm}$	1 필	
20202	창 호 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 (20장)	1 권	
20203	비닐 장판지	럭키 비닐제품 8자방 1간용 럭키하이ペット $2\text{ mm } 137\text{ cm} \times 485\text{ cm}$	1 장	
20204	종이 장판지	황색 4매지 $105\text{ cm} \times 90\text{ cm}$ 정도 (전주산)	1 장	
20205	시 벤 트	일반용, 40kg들이 (상포지정)	1 포	
20206	판 유 리	한국유리 공업제품 투명, 두께 2 mm (1평)	918 cm^2	
20207	페 인 트	제비표(건설화학제품), 황색, 유 광, 외부용 1급품, 4ℓ들이	1 통	
20208	합 석	별표(일선산업), #31 (두께 0.23 mm) $90.9\text{ cm} \times 181.8\text{ cm}$ 평판	1 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 고
20209	스 레 이 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5cm 72.72cm × 181.8cm 석면, 소플 (11.5) (KS 표시품)	1 장	
20210	합 판	나왕합판 90.9cm × 181.8cm (3자 × 6자) 두께 3.6mm	1 장	
20211	벽 둘	직벽둘 21cm × 6cm × 9cm	10 장	
20212	기 와	시멘트제품, 겸정색 30.3cm × 30.3cm	10 장	
20301	온 수 저	성인용 70%은, 무게 75g 정도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2	스 태 인 레 스 수 저	성인용, 프레스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3	주 발	스테인레스제품 성인남자용, 대접 포함, 단순무늬, 두께 1.5mm (상표지정)	1 벌	
20304	양 온 솔	직경 30cm 뚜껑포함 (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c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cm 무늬단조 (상표지정)	1 개	
20307	컵	보통품, 유리제품, 1 흡 7작들이 8개 (상표지정)	1 조	
20308	주 전 자	선탁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ℓ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 라 이 팬	범랑제품, 직경 25cm 정도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20310	코오퍼셋트	행남사, 은하수무늬, 유색 6별 1등품	1 조	
20311	버 컷	프라스틱제품 15ℓ 들이 두껑 포함(상표지정)	1 개	
20312	항 아 리	오지, 유광, 손잡이 달린것, 뚜껑 제외 4.0ℓ들이	1 개	
20313	세 솟 대 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cm(상표 지정)	1 개	
20314	밥 상	자개상(홍파, 민무늬) 피나무 45cm × 60cm × 28cm	1 개	
20315	거 울	45.5cm × 90.9cm(유리크기), 호 마이카테(폭 5cm, 두께 2cm) 유리두께 2mm	1 개	
20316	탁 상 시 계	세이코(한국시계제품), 코로나형 (원형)	1 개	
20317	벽 시 계	" " 4P-823형	1 개	
20318	전 기 다 리 미	자동열조정장치 부착 100V- 500W(상표지정)	1 개	
20319	백 열 등	투명 10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 개	
20320	형 광 등	번개표, 주광색, 갓제외 20W, 일반조명용(KS표시품)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20321	책 상	철강제품, 외소매책상, 윗설합1개, 평축설합 2개, 1,065mm(W) x 760 mm(D) x 750mm(H) (상표지정)	1 개	
20322	의자	평의자(철제제품, 팔걸이 및 쿠 손있는것) 높이 45cm	1 개	
20323	자전거	3,000리호 표준형(26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 대	
20401	텔레비전 수상기	금성사제품, VT816-B형, 48.2cm (19인치) 220-V겸용	1 대	
20402	선풍기	금성사제품 FD 3518 H형 35.56cm (14인치)	1 대	
20403	냉장고	대한전선 (TR 1607)형 160ℓ	1 대	
20404	라디오	금성사제품, RF 188형 휴대용(전전지용) FM겸용	1 대	
20405	전축	별표모델 - 5444	1 대	
20406	녹음기	금성사제품 모델RE 510, 휴대용	1 대	
20407	믹서	금성사제품 M-1201형	1 개	
20408	파아노	삼익피아노, 호루겔 W.G-9(건반 88개)	1 대	
20409	캐비넷	한국제품, 철강제 양복장, 양문, 안설합 2개 (페인트 도장) 177cm x 96cm x 59cm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20410	재 봉 틀	드레스미싱, MSBD형, 캐비넬형 (누황)	1 대	
20411	난 르	한일 전기(주)제품, 한일 OH-30	1 대	
20412	곤 르	석유용량 4.2ℓ (상표지정)	1 대	
20413	전 화 기	M-70형 다이알식, 흑색	1 대	
20501	수 도 르	가정용전용 전월간 기본요금포함, 서울, 부산(30t), 대구, 인천, 대전, 광주(25t), 그외(20t)	※	
20601	오 물 수 거비	일반가정, 1등급	1 개월	
20602	인 분 제 거비	" 18ℓ 들이	1 통	
20603	숙박료 (호텔)	율류, 독방, 침대, 1인 1박, 독탕 부설 식사제외	1 일	
20604	숙박료 (여관)	1류, 1인 1박, 독방, 식사제외	1 일	
20605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6	목 수 임	" "	1 일	
20607	미 장 이 임	" "	1 일	
20608	칠 장 이 임	" "	1 일	
20609	잡 부 임	급식제외	1 일	
30101	전 기 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KWH	☆
30201	열 탄	소형 22곡탄 적매점 판매가격 (배달료 제외) (상표지정)	10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 고
302 02	가 스	유공제 품, 가정용, 프로판가스 (배달료와 통값제외)	10kg	
302 03	숯	참나무 숯·흑탄	100 g	
302 04	석 유	유공제 품, 등유	2ℓ	
303 01	성 냥	가정용 대형 8 각형 750~800 개피 들이 (상표지정)	1통	
303 02	양 초	6 개들이, 잡당 300g 정도 (상표 지정)	1갑	
401 01	마 춤 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트로피칼(울 40%, 폴 리에스터 60%) 인견반침	1벌	
401 02	마 춤 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순모복지(해링본) 52S/2 인견반침	1벌	
401 03	마 춤 속녀복 (여름용)	선경직물·스카이본디 합성직물 필없는 원피스, 나이론다후다발침	1벌	
401 04	마 춤 속녀복 (겨울용)	선경직물, 범효데리칼 챠지울 100% 투피스, 나이론 다후다 발침	1벌	
401 05	마 춤 코 트	제일모직·슈퍼코트, 남자용을 40%, 폴리에스터 60%인견 반침	1벌	
401 06	마 춤 오 바	경남모직, 여자용준모, 친칠라, 인견반침	1벌	
401 07	기 성 신사복 (여름용)	울 40%, 폴리에스터 60% (삼성물산)	1벌	

품목 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108	기성복사복 (겨울용)	울 40%, 폴리에스터 60% (삼성물산)	1벌	
40109	한복	성인 여자춘추용, 스카이론 상하각각 3겹(통시아에 당사심), 기성복	1벌	
40110	학생복 (여름용)	남자 중학생용, 상의는 TC(65% 폴리에스터 35%면), 하의는 T.R(50% 폴리에스터, 50% 레이온) 기성복 4호	1벌	
40111	학생복 (겨울용)	남자 중학생용, 에리트(제일합섬)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나이론다후다 반침, 기성복 4호, 흑색	1벌	
40112	아동복	TC(혼방) 반팔원피스, 유색 기성복(8~9세용)	1벌	
40113	잠바	카시미아, 춘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팔, 나이론다후다 안반침, 기성복	1매	
40114	진팔 와이셔어츠	남자성인용(폴리에스터 65%, 면 35%) (상표지정)	1매	
40115	반팔 와이셔어츠	남자성인용(폴리에스터 65%, 면 35%) (상표지정)	1매	
40116	남방셔어츠	남자 성인용 반소매(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매	
40117	면내의	남자 성인용, 겨울용상, 하 38S 무색(상표지정)	1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118	화학 사내의	남자 성인용, 겨울용 상, 하 유색 폴리아크릴 100% (상하지정)	1 벌	
40119	런닝 셔어츠	남자 성인용, 바팔 38 S 흰색. (상표지정)	1 매	
40201	광 폭	면 16S × 16S 폭 88.9 cm 포팩 안된것 (1마) (상표지정)	90.9 cm	
40202	포 플 린	면 30S × 30S, 폭 111.76cm 날염 (상표지정)	90.9 cm	
40203	이 불	실크 원단, 한일 샤별 (2kg정도) 2인용 (한일 합섬)	1 장	
40204	나이론 태피터	나이론 100%, 70 테니엘 폭 4.4 인치 (111.76cm.) 유색	91.4 cm	
40205	제 봉 사	TC (폴리에스터 65% 면 35%) 60S/S, 길이 5,000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화 학 사	비둘기표 (태광산업) 아크릴 애석 스란 100%, 10S/2 편물용 유색	453.6 g	
40207	솜	면, 지대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301	마춤남자구두	복수혁, 나이론창, 플라스틱굽, 검은 색	1 켤레	
40302	마춤여자구두	복수혁, 나이론창, 플라스틱굽	1 켤레	
40303	남자 고무신	말표, 흰색 260mm 은하수 (KS 표시품)	1 켤레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304	여자고무신	말표, 흰색, 흰바닥 230mm 9,000백여대 (KS 표지품)	1 켤레	
40305	운동화	말표,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이크형 230mm	"	
40306	비신	말표,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 고무제품 260mm	"	
40307	비닐화	왕자표, 합성피혁, 고무창, 밤색 260mm	"	
40401	남자양말	성인용, 추동용, 나이론 20% 율 30%, 네드론 50%, 단색 (상표지정)	"	
40402	여자양말	추동용, 나이론 100%, 단색 (상표지정)	"	
40403	아동양말	추동용, 카비양말, 나이론 100% 단색 (8~9세용), (상표지정)	"	
40404	스타킹	반달표, 살색나이론 100% 8분 (무늬, 뒷줄없음)	"	
40405	허리띠	소가죽(속피) 무쇠장식, 폭 2.5cm 정도	1 개	
40406	장갑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 켤레	
40407	넥타이	동아견적, 폴리에스터 50%, 아세테이트 50% 최신형	1 매	
40408	머풀레	남자성인용, 본건 40S 단사 (110cm × 30cm) 중품	"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409	모자	중고교생용, 율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 안발침, PVC 청	1 개	
40410	가방	남자중학생용, 100% PVC 면접 작(스폰지식)	1 개	
40411	모포	한일 합성, 일반용 율纶모포 바닥은 면 30%, 아크릴 70% 170 cm × 220 cm	1 매	
40412	수건	면 23S, 80cm × 32cm정도, 유색 (상표지정)	1 매	
40413	우산	협립제품, 흠살 10개, 2단 데드 론, 검은색	1 개	
40414	양산	협립제품, 흠살 10개, 3단 (나이론 100%) 유색	1 개	
40415	손목시계	오리엔트 21석, 남자용 자동, 날자, 요일, 방수, 방충, 모델 NO 5065, 스테인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1 개	
40416	금반지	순금 (99%) 3.75 g 무늬단조 (수공임포함)	1 개	
40417	핸드백	합성피혁제품,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 (상표지정)	1 개	
40418	안경	남자보안용, 국산테 (세루로이드 6 mm), 주입알 (국내가공) 슈퍼젤 걸제	1 개	
40501	양복세탁료	신사복 상, 하 드라이크리닝 (다림질포함)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관 리	단 위	비 고
40502	와 이 셔 츠 세 틱 료	성인용(다림질 포함)	1 회	
40503	재 봉 료	부인용, 춘추용 한복(화사사 웃 감 3겹), 수공임	1 벌	
40504	의복 수선료	진사복, 짜집기 3cm 정도	1 회	
40505	신 수 선 료	남자구두 1켤레, 훗창수선료(재 료값 제외)	1 회	
40506	구 두 닦 이	남자용 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1 회	
50101	영 양 제	비콤(유한양행) 100정들이	1 병	
50102	감 기 약	노박킹 당의정(동평약품) 10정 들이	1 병	
50103	소 화 제	부채포 활명수(동화약품) 60mℓ 들이	1 병	
50104	항 생 제	테트라사이클린(종근당제약) 250mg	10 캡슐	
50105	해 독 강 장 제	박카스 D(동아제약) 100CC 들이	1 병	
50106	구 총 제	버막스(유한양행) 6정들이	1갑	
50107	의 상 약	마크롬액 15CC들이	1 병	
50108	진 칠 료	종합병원, 보통진료	1 회	
50109	입 원 료	종합병원 입원환자 2일용(식 사포함 약대제외)	1 일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110	분 만 료	종합병원 2박3일 2인용실 입원, 경산, 정상분만(식사포함, 약대제외)	1회	
50111	엑스레이 촬영료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순촬영 (14인치×14인치)	1회	
50112	인 삼	금산삼 50편 (1등품 : 松) 300g	1상자	
50201	화장비누	다이알비누 동산유지 100g	1개	
50202	세탁비누	일반가정용, 4호 550g (상표지정)	1개	
50203	자루비누	레키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 들이	1포	
50204	치 약	레키치약, 100g들이 (중형)	1개	
50205	칫 솔	레키 777 성인용(케이스포함)	1개	
50206	화장크림	아보레미 보라 모이스란크림 130g (태평양화학)	1갑	
50207	화장분	아보레미보라 헤이설페트 10g (태평양화학)	1갑	
50208	화장수	쥬단학 세로본 모이스춰 밀크로손 140mℓ (한국화장품)	1병	
50209	포마드	밀학 맨담포마드 60g (한국화장품)	1갑	
50210	화장지	장미표 특제 (원통형), 흰색	1개	
50211	살충제	에프킬러 에어로졸(삼성제약) 주암분무식 300mℓ들이	1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212	면 도 날	도루코(한일공업) 10매	1갑	
50213	이 용 료	성인(차 유포함) 중류	1회	
50214	고 테 료	성인여자(가발, 캣트료 제외) 중류	1회	
50215	파 마 료	성인여자, 보통파마(B급) 중류	1회	
50216	복용료(성인)	남자, 일반 대중탕	1회	
50217	" (아동)	일반대중탕(7세이하)	1회	
50301	시내버스료	성인, 시내 1구간	1회	
50302	시외버스료	포장도로, 일반여객	1km	☆
50303	고속버스료	서울-각 도시간, 성인, 편도	1회	☆
50304	택시료(기본)	시내, 기본요금(2km)	1회	
50305	" (초파)	2km 초파요금	1회	
50306	기차료(왕행)	대인 40km	1회	☆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7.0km	1회	☆
50308	항 봉 료	대한항공, 서울-도시간 성인편도	1회	☆
50309	선 박 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등실 20해리	1회	☆
50401	전화료(기본)	가정용 1대, 시내 통화료	1개월	☆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회	☆

품목 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403	우편료(국내)	통상우편 1종(필서봉서, 20g 이내)	1 통	☆
50404	전 보 료	시외, 보통 10자이내	1 회	☆
50405	항공료(국제)	항공서간	1 통	☆
50501	국 민 학 교 교 과 서	4학년 1학기용, 국어, 산수, 사 생, 자연	※	☆
50502	중학교교과서	영어(중1,미들스쿨), 수학(중1, 중등수학, 이성현저)	※	☆
50503	고 등 학 교 교 과 서	영어(고1,하이스쿨), 수학(고1, 현대공통수학-이성현저)	※	☆
50504	국 민 학 교 육 성 회 비	가구당 1인 재학생분	1 개월	
50505	남 입금(공중)	2학년생	1 분기	
50506	" (사중)	"	1 분기	
50507	" (공고)	"	1 분기	
50508	" (사고)	"	1 분기	
50509	" (국내)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 학기	
50510	" (사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 학기	
50511	" (전문)	기계과 4학년생	1 학기	
50512	유 치 원 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 개월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513	참 고 서	엣센스영한사전(민중서화) 3×6판 인도지, 비닐포지, 1,680 페이지	1권	☆
50514	입시학원비	대학 입시준비, 영어단과반 1일 100분 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개월	
50515	자동차학원비	치정자동차학원, 본과 영업반 10주과정 수강료(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 제외)	"	
50516	양재학원비	재단과, 4개월과정 수강료(입학 금 제외)	"	
50517	도서관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회	
50518	도서관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일	
50601	볼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표시품	1개	
50602	연필	문화연필 자파이어 HB향나무 (지우개부착)	1다스	
50603	만년필	파일롯드 55G2형	1개	
50604	노트(대)	모조지 48매(표지포함) 18.6 cm×26.5cm(상표지정)	1권	
50605	"(소)	챙지 14매(표지포함) 14.5cm ×20.5cm(상표지정)	1권	
50606	도화지	마니라지(45.4kg) 1면사용, 수채 화용, 8절지	1장	
50607	시험지	챙지 16절지	20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608	봉 투	모조지제품, 흰색	10장	
50609	크 레 파 스	왕자파스, 굵은 20색 (6cm정도) (왕자문구)	1감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잉크 30cc들이	1병	
50701	신문구독료	한국일보, 가정배달	1개월	☆
50702	주 간 치	주간한국, 32면	1부	☆
50703	여 성 치	주부생활 (달월분)	1권	☆
50704	대 중 치	아리랑 (달월분)	1권	☆
50705	아 동 치	소년중앙 (달월분)	1권	☆
50706	종 학 치	신동아 (달월분)	1권	☆
50707	문 예 치	현대문학 (달월분)	1권	☆
50708	영화관람료 (방 화)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 포함 (각종 구호금 제외)	1회	
50709	영화관람료 (의 화)	" "	1회	
50710	텔레비전시청료	1대	1개월	☆
50711	고궁업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회	
50712	사 전	명함판, 흑백 3~4매 (상류사진 관)	1조	
50713	흑백 필름	대한필름 폭 35mm 20장 촬영 용	1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714	칼 라 필름	코닥칼라 20장 촬영용, 35mm 국내제본	1통	
50715	장 난 감	유색, 고무용, 직경 18cm 정도	1개	
50716	삼륜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 장식	1대	
50717	운동기구	축구볼, 보급용(중앙구), 소가죽 32피	1개	
50718	레코드판	LP형, 지름 30cm, 스테레오, 국내 일류가수 신곡 최신취입	1장	
50719	생 화	국화꽃 싱싱한것 직경 5, 6cm	1송이	
50801	담 배	각종권련	갑	☆
50901	행정수수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통	
50902	행정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통	
50903	행정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1통	

I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쌀~상품과 쟁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어개류~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미역~지역별 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마늘~규격에 맞는 접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 kg(1과)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접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곶감~반드시 꽂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짙으로 묶어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파자류~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감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밀크~목장 우유와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주~용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방세~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처는 변경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 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 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 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등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 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 원에 월세 5,000 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 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 원 매월 지불액 5,000 원으로 기입하고 등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주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료 부과징수는 제외된다.

오플수거비~지방별로 1등급(월주입, 재산세, 전평등 택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료~율류란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탄~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직매점 점포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복수형이라 함은 인조합성 패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

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신~단추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남자용 오리엔트 21석으로서 요일과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카렌다형) 자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 반지~순도(99%)를 유지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파복류~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테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질이 840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엘~나이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 일 때 1데니엘이라 한다.

진찰료~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재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엑스-레이 치료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을 적으로 배급하는 식사는 포함되며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경산이란 초산이 아닌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지혈제 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 3일 입원이란 평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기간으로 그 기
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
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
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팁으로 간주하며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중류라 함은 괴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
소를 말하며, 보통의 차유를 포함하며 특수 서비스(손톱손질, 맷사아
지 등)로 인한 팁은 해당 어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
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터키탕, 사우나독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 이하
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
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
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여, 10세 이상을 성인 5~9세
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